

알기쉽게 정리한

신한대학교 학사 매뉴얼

내용 업데이트 : 2017.08.22

- **수강신청**
- **성적** (성적등급, 유고결석 출석인정, 학사경고)
- **학적변동** (휴학, 복학, 제적 및 자퇴)
- **전공선택** (부전공 및 복수전공, 전부 및 전과)
- **졸업** (졸업논문 등의 인증기준, 외국어졸업인증제,
졸업유예, 취득성적 및 학점포기, 조기취업, 조기졸업)
- **증명서 발급**

목 차

I. 수강신청	
1. 수강신청 방법	2
2. 수강신청 유의사항	3
3. 재수강 및 졸업학점 기준	4
II. 성적	
1. 유고결석 출석인정	6
2. 성적등급	7
3. 학사경고	8
III. 학적변동	
1. 휴학	9
2. 복학	11
3. 제적 및 자퇴	12
IV. 전공선택	
1. 부전공 및 복수전공	13
2. 전부 및 전과	16
V. 졸업	
1. 졸업대상	18
2. 학년수료 및 학사학위 수여	19
3. 졸업논문 등의 인증기준	20
4. 외국어졸업인증제	21
5. 졸업유예	22
6. 취득성적 및 학점포기	23
7. 조기취업	25
8. 조기졸업	26
VI. 증명서 발급	
1. 학사증명서 신청방법	27
2. 개인정보변경	28

Ⅶ. 부록

1. 수업학적팀 담당업무 및 연락처 안내	29
2. 학과(부) 연락처 및 위치	30
3. 캠퍼스별 배치 배경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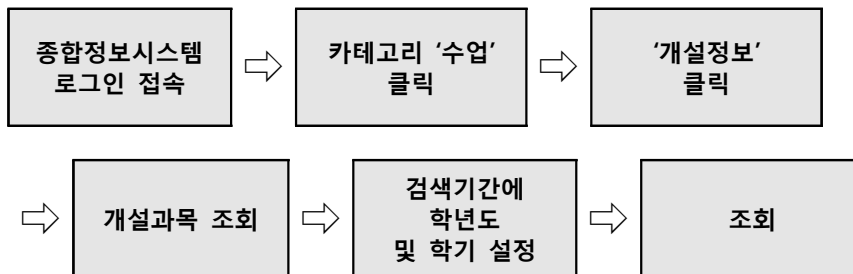
I 수강신청

수강학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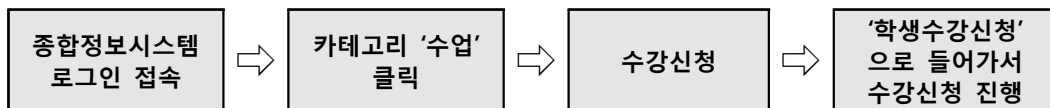
- ① 매학기 재수강을 포함하여, 최소 15학점 이상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6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은 최소 9학점 이상(재수강 불포함)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직전학기 평점이 4.0 이상이면서 F등급이 없는 학생은 재수강을 포함하여 24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③ 직전학기에 학사경고(2.0 미만)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수강신청 학점을 18학점 이하로 제한합니다.
- ④ 수강신청한도를 초과하여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 방법

① 개설교과목 조회



② 수강신청



③ 수강신청 취소

수강취소는 수강신청 내역에서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 진행하시면 됩니다.

※ 수강신청 취소 후 취소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강신청 유의사항

- ① 수강신청 전 해당 학과(부)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②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한 교과목에 대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 학생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인원이 초과된 경우 당해 학기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 전공인 경우 소속 학과에서 관련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④ 수강신청에 대한 내용은 학생이 책임지게 되므로 수강신청 및 변경·취소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⑤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수업관리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폐강되오니 폐강강좌를 수강신청 한 학생은 반드시 수강신청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⑥ 수강신청 변경 시 변경 교과목에 대해 1주차 미출석 시에는 결석으로 처리되므로 변경 또는 신규 수강을 원하는 교과목이 있을 시에는 해당 교과목 수업에 필히 출석을 해야 합니다. ※ 폐강 교과목도 동일하게 적용
- ⑦ 수강신청 변경 기간에 변경 수강신청 한 교과목에 대한 1주차 출석인정은 변경 전 교과목 출석확인서를 변경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 한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이전에 수강신청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강철회

- ① 수강과목을 철회하는 경우 다른 교과목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 수강학점은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저 이수학점 : 6학기 이전 15학점 이상, 6학기 이후 9학점 이상
- ② 수강철회 기간은 수강신청 변경 이후부터 개강 후 3주 이전까지입니다.
- ③ 수강신청 철회 방법은 수강신청 철회기간 내 수강철회 할 교과목 담당교수님의 확인과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강신청 철회서」를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재수강

- ① 이미 수강한 교과목 성적이 C+ 이하인 때에는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 대체 교과목으로 재수강을 신청해야 합니다.
- ② 재수강 신청학점은 매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③ 재수강으로 취득한 동일교과목의 이전 성적은 평점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최종으로 취득한 성적을 평점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④ 재수강 이전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재수강(R)과 이전 성적이 모두 표기 됩니다.
- ⑤ 재수강 최대 성적은 B+입니다.

교육과정 및 이수단위

- ① 교육과정의 적용
 - ㉠ 신입학생은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재입학 또는 복학생은 그 해당학년도의 동일학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 복학생이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하여 수강할 교과목이 수강교과목과 중복될 경우 복학 해당학년도의 교육과정 중 저학년에 편성된 교과목이나 다른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여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② 교과이수단위
 - ㉠ 각 교과목별 최소이수학점은 전공 65학점(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포함), 교양 29학점(기초교양 포함)입니다.
 - ㉡ 교양 졸업 최소 이수학점은 기초교양 13학점 및 핵심교양 16학점 (4개 영역별 2학점 이상)으로 총 29학점이며, 2학년 2학기까지 이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졸업학점 기준

- ① 졸업학점 : 130학점
- ② 교양이수 학점 : 29학점
(기초교양 : 13학점, 핵심교양 : 16학점) ※ 반드시 영역별 1과목 2학점 이상 포함
- ③ 학과 전공 이수학점 : 65학점 이상 ※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반드시 포함
- ④ 복수전공 : 36학점 이상
- ⑤ 부전공 : 21학점 이상

(구)한북대 통합복학생 교육과정 및 졸업요건

- ① 교육과정은 신한대 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정 제6조 1항에 따라 복학 당시의 신한대 교육과정을 적용합니다.
- ② 졸업요건은 (구)한북대 입학 당시의 졸업요건을 적용합니다.
 ※ 다만, (구)한북대의 교육과정을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후 복학한 학생은 신한대 교육과정과 졸업요건을 적용합니다.

○ (구)한북대와 신한대의 졸업 요건

구분	(구)한북대	신한대
졸업학점	130학점	130학점
교양필수 등 학점	10학점 + 채플 2학기 이상 수강	기초교양 13학점 + 핵심교양 16학점
전공 최소이수 학점	60학점	65학점

○ (구)한북대 교양필수 교과목과 신한대의 대체 교과목

(구)한북대		신한대		비고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기독교 개론	2	기독교의 이해	2	-
기초영어회화1	2	English Reading & Listening(1)	2	-
기초영어회화2	2	English Reading & Listening(2)	2	
컴퓨터 활용	3	컴퓨터관련 교과목	2	교과목 인정(MOS)
사회봉사	1	사회봉사	2	핵심교양과목으로 대체
채플 2회	P/F	채플	1	현행 채플교과목 대체
		미션채플	1	
합계	10학점 P/F	합계	12학점	

Ⅱ 성적

[성적평가]

성적처리

교과목별로 시험성적·출석상황·과제물 평가·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며, 수업일수 3/4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배정비율		
출석 20%	중간/기말고사 및 평소 학업성적 80%	계 100%

※ 즉, 4번 이상 결석 시에는 학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F급)

유고결석 출석 인정

결석한 학생이 표의 사유에 의한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경우, 해당 출석인정일수 내에서 유고결석으로 인정합니다.

결석사유	출석인정기간	증빙서류
가.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 사망	7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외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3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다. 병역이행을 위한 신체검사	해당일 (지방일 경우 3일)	신체검사 통지서
라. 본인의 결혼	7일	청첩장
마. 본인의 질병	14일 이내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바.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행사 참석	해당기간	관련 공문서
사.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	해당기간	출석대체인정서

성적등급

각 교과목 및 전 과목의 평균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급을 급제로 하고 F급을 낙제로 합니다.

성적등급	성적평점	성적실점
A+	4.5	95-100
A	4.0	90-94
B+	3.5	85-89
B	3.0	80-84
C+	2.5	75-79
C	2.0	70-74
D+	1.5	65-69
D	1.0	60-64
F	0	0-59
P	Pass	-
N	Non-Pass	-

※ 평점 산출방식

각(교과목 학점 × 교과목 평점)의 합

총 수강신청 학점

※ < 예시 >

구분	교과목명	학점	성적등급	성적평점
전선	교과목(가)	3	A+	4.5
전선	교과목(나)	3	B+	3.5
전선	교과목(다)	3	A+	4.5
기초교양	교과목(라)	2	A+	4.5
핵심교양	교과목(마)	2	B+	3.5
핵심교양	교과목(바)	2	C+	2.5

취득학점 15

$$\text{평점} = (3 \times 4.5 + 3 \times 3.5 + 3 \times 4.5 + 2 \times 4.5 + 2 \times 3.5 + 2 \times 2.5) / 15$$

$$= 3.90$$

학사경고

- ① 성적사정회 이후 해당학기 평균평점이 2.0미만인 학생 또는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경고합니다.
- ② 3회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되며 제적된 학생은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③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수강신청학점을 18학점 이하(재수강 포함)로 제한한다.
 - ※ 다만, 졸업유예자와 총장이 정한 인재개발원의 학업·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예외입니다.

Ⅲ 학적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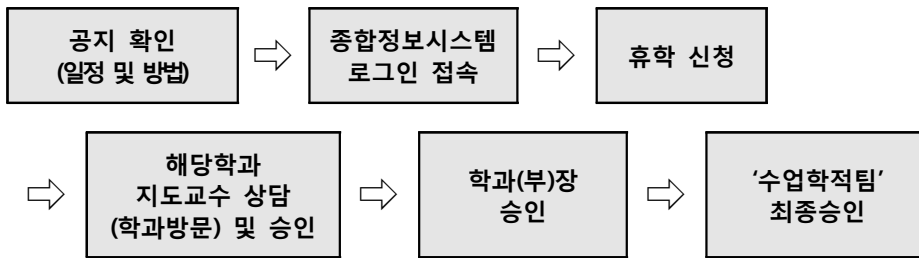
[휴학]

휴학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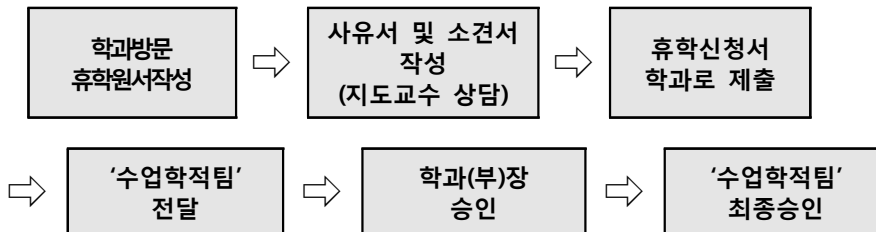
휴학 종류	사유	기간	비고
일반 휴학	가정 사정 등으로 휴학 하는 경우	1년 2회까지 (1회 6개월)	6회를 초과하여 휴학 불가능
	일반 개인 사정으로 휴학하는 경우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군 휴학	재학 중 군 입대를 할 경우	군 복무기간동안	입영통지서 첨부해야함.
육아 휴학	출산과 육아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2년	-

휴학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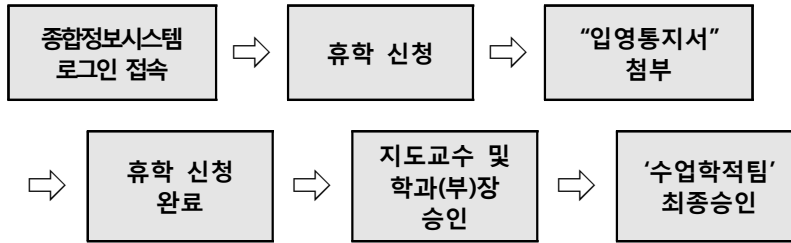
- 휴학신청기간 내 신청



- 휴학신청기간 외 신청



- 군휴학 신청



※ 다만, 1학년 1학기에는 휴학이 불가능 합니다. (군휴학 제외)

휴학신청결과 확인 방법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휴학승인단계 및 「학적」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학예정학년도와 학기를 반드시 확인 하세요.

성적처리

- 일반휴학 : 학기 중 휴학 시 성적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군휴학

①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전 입대 : 학기 불인정

②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후 입대 : 추가시험 실시 후 취득과목이 60점 이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단, 기말고사 종료 후 입대자는 반드시 기말고사를 응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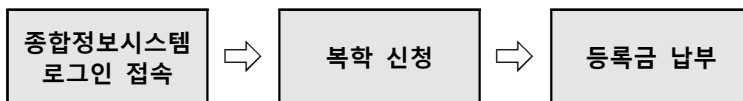
[복학]

복학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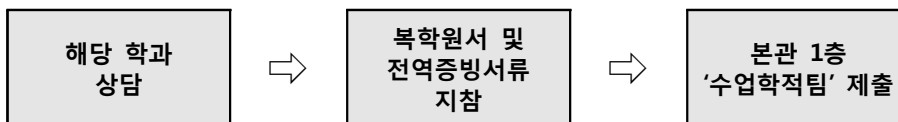
복학 종류	정의	신청방법
일반 복학	일반 휴학의 기간만료와 동시에 복학	온라인 신청
조기 복학	휴학 중 복학 예정일보다 이르게 복학	학교 방문 신청

※ '균' 조기 복학의 경우, 반드시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일반복학 신청방법



조기복학 신청방법



※ 조기복학원서, 전역증 사본(혹은 전역예정증명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지참하여 학교에 방문합니다.

※ 기타사항은 해당학과 사무실에 문의바랍니다.

[제적]

제적 대상

미등록 제적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은 학생
미복학 제적	휴학 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이중학적 제적	다른 대학에 신입 또는 편입학한 학생
기타 제적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 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학사경고 제적	3회 연속해서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징계 제적	학칙 등의 위반으로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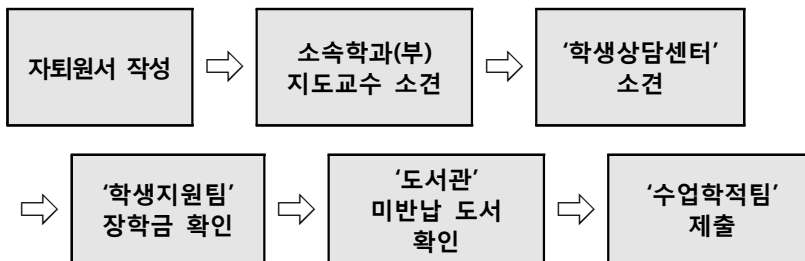
※ 제적된 학생은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학사경고 제적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총장이 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제적을 면할수 있습니다.

[자퇴]

부득이한 사유로 자진 퇴학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서를 제출 후 학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퇴원서는 재학생 및 휴학생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퇴절차



※ 등록금반환대상 학생은 서류제출 후 20일 전·후로 통장에 자동 입금됩니다.

○ 등록금 반환규정

경과 일 수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30일 경과 후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60일 경과 후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90일 경과 후	반환금액 없음

IV 전공 선택

[부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자격

- ① 주전공 학과(부)에서 제 2학기 이상 수료(예정)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편입학생의 경우 편입한 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부전공 이수 신청자는 평점 2.0 이상, 복수전공의 이수 신청자는 평점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허용범위

-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양성학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기사 양성학과로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간호학과, 안경광학전공, 치위생학과, 치기공학과, 방사선학과, 임상병리학과
- ② 교직과정 설치학과인 유아교육과는 부전공 및 복수전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③ 각 학과(부)별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인원은 입학정원의 20% 내외로 하며, 특정학부의 전공 또는 학과에 집중적으로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이수

- ① 부전공을 이수하기 위한 부전공 이수학점은 21학점, 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한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36학점입니다.
- ② 부·복수전공 이수자는 교양 및 주전공 교과외구분별 최저 이수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 ③ 부전공의 경우 동일교과목은 주전공과 부전공으로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수전공의 경우 주전공과 복수전공간에 중복 편성된 교과목은 과목 이수와 학점을 12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됩니다. ※ 다만, 졸업학점에는 이중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 ④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은 주전공의 최저 이수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부전공 및 복수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복수전공을 이수하지 못하였으나 부전공 이수학점을 충족한 경우에는 부전공 이수로 인정됩니다.
- ⑤ 전과한 학생이 전과 이전에 이수한 학과의 학점으로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수업학적팀'에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심의를 거쳐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⑥ 편입생은 부전공 및 복수전공 학과(부)가 편입 전 전적대학의 학과(부)와 동일(유사)학과(부)일 경우 전적 대학성적으로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방법

부·복수전공 희망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 → 소속학과(부)장과 부·복수전공 학과(부)장의 허가를 받아 → 본관 1층 '수업학적팀'에 제출(최종승인)

※ 부·복수전공 이수신청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캠퍼스 교차이수 희망자는 수업학적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졸업 학기부·복수전공 이수신청기간 내)

선 이수 교과목 지정

- ① 부·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하여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지식이 필요한 경우 부·복수전공 이수 학과에서는 선 이수 교과목을 지정하여 이를 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복수전공학생은 지정된 선 이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② 선 이수 교과목은 전공기초와 전공필수에 한하여 9학점 이내로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③ 선 이수 교과목 이수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복수전공 이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수사정

- ① 복수전공 이수자에게는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동시에 학위를 수여합니다.
- ② 부·복수전공에 대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그 사실을 학적부에 등재하고 졸업증명서 등 기타 증명서에도 표기합니다.

이수기간

부·복수전공은 주전공 학과(부) 졸업 시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의 경우 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복수전공을 이수할 때 까지 주전공 학과(부)의 졸업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수포기

부·복수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말 까지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부)장과 이수 희망 학과(부)장의 허가를 받아 '수업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위수여

- ① 복수전공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이수하여야 할 학점 외 에 주전공 및 복수전공 학과(부)에의 졸업논문 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②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주전공 학과(부)의 학위명과 복수전공 학과(부)의 학위명을 병행 표기한 학위증서를 수여하며, 부전공 이수자에게는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주전공 학과(부)와 부전공이수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발급 합니다.

증명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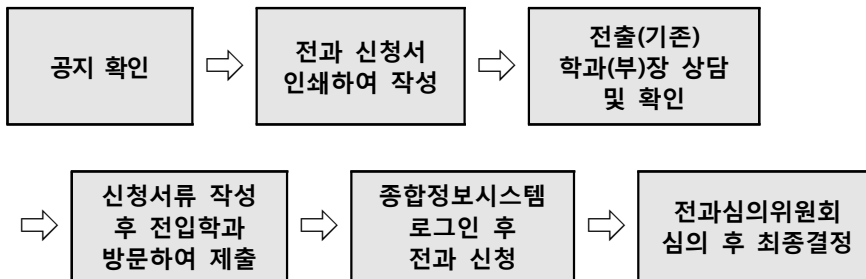
- ① 발급되는 증명서에는 주전공 학과(부)와 부전공 및 복수전공 학과(부)의 이수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 ② 복수전공 이수자의 성적증명서는 주전공 교과목과 복수전공 교과목을 구분란에 표시하여 발급합니다.

[전 부 및 전 과]

지원 자격 및 횟수

구분	2학년 전과	3학년 전과	4학년 전과
학기	2학기이상 수료하고 3학기 진급예정자	4학기이상 수료하고 5학기 진급예정자	6학기 이상 수료하고 7학기 진급예정자
취득학점	졸업학점의 1/4이상 33학점이상	졸업학점의 2/4이상 65학점이상	졸업학점의 3/4이상 98학점이상
기타	재학 중 1회만 신청 가능		

전과 신청방법



○ 전과 신청서류

전과 신청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양식 다운로드
학업 계획서	
성적 증명서	교내 자동화발급기 / 인터넷 / 주민센터 팩스민원을 통해 발급
기타 전과 필요서류	※ 공지 참고

전과의 허용범위

- ① 전과는 학과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과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거나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외국인 학생이 언어 또는 학업의 곤란으로 전과를 신청한 경우 전과 가능인원의 범

위 내에서 우선 선발 할 수 있습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 다만,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정원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전과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양성학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기사 양성학과의 경우
 - ※ 간호학과, 안경광학전공, 치위생학과, 치기공학과, 방사선학과, 임상병리학과
 - ㉡ 교직과정 운영학과인 유아교육과의 경우
 - ㉢ 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이 특기분야와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다른 학과로의 전과를 지원하는 경우
 - ㉣ 편입학생의 경우 ※ 특례편입학생 제외

학점인정 & 교과이수

- ① 전과를 허가 받은 학생이 전출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되며 전입학과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 ※ 다만, 동일학부(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제외) 내 전공변경의 경우에는 전출전공 소속으로 전입전공의 전공교과목에 대하여 취득한 학점은 해당 전공주임교수의 심의를 통하여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전과를 허가받은 학생은 제2학년 전과의 경우 전입학과의 3학기, 제3학년 전과의 경우 전입학과의 5학기 과정부터 이수해야 합니다.
 - ※ 다만, 전입학과의 교육과정에 선수과목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과 학생의 등록

전과 전에 등록을 완료한 학생은 등록금이 대체됩니다.

- ※ 다만, 등록계열 변경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미 납부한 학기 등록금 책정액을 기준으로 반환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장학금 수혜 제한

- ① 전과한 당해 학기의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다만, 가계곤란장학과 근로장학의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 ② 입학당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전과할 경우 해당 장학금의 수혜자격은 상실됩니다.
 - ※ 다만,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혜자격이 상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V

졸업

대상

8학기 등록을 마친 사람이며, 동시에 졸업학점·졸업논문(학과에 따라 실험실습보고·실기 발표·졸업종합시험 등으로 대체 가능) 심사 합격 및 외국어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대상입니다.

※ 졸업에 필히 이수해야 할 최저 이수학점은 전공 65학점, 교양 29학점(기초교양13학점, 핵심교양 16학점)으로 총 13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 졸업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전공

각 학과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전공과 관련한 졸업요건은 전공 교육과정표(해당학과 교육과정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교양

구분	교과목	학점
기초교양 (필수)	동기유발학기	1
	채플	1
	미션채플	1
	기독교의 이해	2
	English Reading&Listening I	2
	English Reading&Listening II	2
	English Reading&Listening III (중국어 1)	2
	English Reading&Listening IV (중국어 2)	2
핵심교양 (선택)	인간·문화 영역	2
	사회·역사 영역	2
	자연·과학 영역	2
	예·체능 영역	2
합계		29

[학년수료]

각 학년별 소정의 학기등록·이수학점 취득 시 해당 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년 수료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학년별 수료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다음의 학점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수료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년	학점기준	
1학년	졸업학점의 1/4 이상	33학점
2학년	졸업학점의 2/4 이상	65학점
3학년	졸업학점의 3/4 이상	98학점
4학년	졸업학점의 4/4 이상	※130학점

※ 단, 4학년 수료기준은 전공 최소학점 65학점과 교양 최소학점 29학점을 포함하며 이수해야 합니다.

[학사학위 수여]

규정된 수업연한의 재학(8학기)과 소정의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등(외국어 졸업인증제 포함) 고의 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 학사학위 수여 기준과 수료증 수여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전 교육과정을 이수 + 졸업논문(학과에 따라 실험실습보고·실기발표·졸업종합시험 등으로 대체 가능) 심사에 합격한 학생	학사학위 수여
졸업 논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학생	수료증 수여

[졸업논문 등의 인증기준]

- ① 14학년도 이후 신한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에 관한 학과별 인증기준에 따라 졸업논문 등(해당 학과에 따른 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작품, 실기발표)을 인증받아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 학과(부)별 졸업논문 등의 인증기준

대학	학과(부)	인증기준					비고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졸업작품	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	
사회과학대학	공법행정학과		○				
	유아교육과			○			포트폴리오
	사회복지학과		○				
	언론학과			○			포트폴리오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글로벌통상경영학과	○	○				항목 중 1개 통과
	글로벌관광경영학과		○				
	국제어학과		○				
자연과학대학	식품조리과학부	식품영양전공	○				
		호텔조리전공		○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				
	방사선학과		○				
	치기공학과		○	○			항목 중 1개 통과
	치위생학과	○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뷰티헬스전공			○	○	
안경광학전공			○				
간호대학	간호학과		○				
과학기술융합대학	에너지환경공학과	○	○				항목 중 1개 통과
	IT융합공학부	전자공학전공	○				
		컴퓨터공학전공	○		○		
	섬유소재공학과	○		○			항목 중 1개 통과
자동차공학과		○	○			트랙별 기준에 따름	
디자인예술대학	공연예술학과				○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		
		패션디자인전공			○		
	공간디자인전공			○			

(※ 인증기준이 2가지 이상 표기된 경우 한가지를 선택 할 수 있음[세부사항은 학과에 확인])

- ② 한북대학교로 신입학하여 신한대학교로 통합복학한 학생도 졸업논문 등을 인증받아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 ③ 신한대학교로 편입한 학생 또한 졸업논문 등을 인증 받아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 ④ 또한 본교 학칙 및 규정에 의거하여 졸업논문 등의 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학과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사유로 졸업논문 등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외국어졸업인증제]

외국어졸업인증제 대상

외국어졸업인증제(학과별 토익 등의 어학성적)는 2017학년도 신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되므로 이전 신입학생(2014, 2015, 2016학년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졸업에 관한 규정 제 21조에 의거하여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졸업에 관한 규정 제 21조(적용대상) : 편입학생, 계약학과 신·편입학생, 장애학생, 외국인학생, 예·체능계열학생, 특성화고교를 졸업한 재직자 전형 입학생 제외

○ 학과(부)별 외국어 졸업인증 자격

대학	학과(부)	인증기준											비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TOEIC	TEPS	TOEFL			G-TELP		TOEIC Speak-ing	OPIc	JPT	JLPT		HSK		
				PBT	CBT	IBT	level 2	level 3								
사회과학대학	공법행정학과	550	500										항목 중 1개 통과			
	유아교육과	450														
	사회복지학과	450									N5	5급	항목 중 1개 통과			
	언론학과	550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글로벌통상경영학과	700											4급	항목 중 1개 통과		
	글로벌관광경영학과	600										N4	4급	항목 중 1개 통과		
	국제어학과		750											4급	TOEIC750/ HSK4급 또는	
			650											5급	TOEIC 650/ HSK 5급	
자연과학대학	식품조리과학부	식품영양전공	600	482	493	167	59			level 5	IM	500	N4	4급	항목 중 1개 통과	
		호텔조리전공	450							level 5	IL	500	N4	4급	항목 중 1개 통과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700														
	방사선학과	600	476			57						550	N2	3, 4급	항목 중 1개 통과	
	치기공학과	650														
	치위생학과	600	476			57							550	N2	3, 4급	항목 중 1개 통과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뷰티헬스전공	450													
안경광학전공		500														
간호대학	간호학과	600	500	500	173	61	50	70							항목 중 1개 통과	
과학기술융합대학	에너지환경공학과	500														
	IT융합공학부	전자공학전공	600	500	500	173	61			level 5	IL	550	N3	3급	항목 중 1개 통과	
		컴퓨터공학전공	600	500	500	173	61			level 5	IL	550	N3	3급	항목 중 1개 통과	

	섬유소재공학과	650	520		200	70	57	77			550	N3	3급	항목 중 1개 통과
	자동차공학과	550												
디자인 예술 대학	공연예술학과	-												
	디자인 학부	산업디자인 전공	400	339	350	80	62							항목 중 1개 통과
		패션디자인 전공												
공간디자인 전공														

인증기준

학과별 외국어 졸업인증 자격에 따른 공인 외국어성적에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졸업에 관한 규정 제 22조(인증요건)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면 외국어졸업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졸업예정일 이내 응시하여 취득한 본교 국제어학센터 시행 모의 토의시험 성적
2. 본교에 개설된 English Reading & Listening(1)과 English Reading & Listening(2) 교과목에 대하여 각각 B학점 이상 취득
3. 본교에 개설된 중국어회화(1)-중국어회화(2) 교과목에 대하여 각각 B학점 이상 취득
(※ 단, 2번과 3번 항목 간에 교차인정 불가)
4. 총장이 정한 본교 국제어학센터 시행하는 외국어 프로그램의 이수
5. 총장이 정한 본교의 해외 어학연수 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수

[졸업유예]

졸업유예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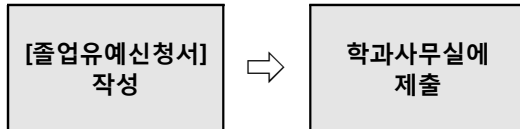
졸업요건(8학기 이상 이수, 졸업학점 이수, 졸업논문 등 인증)을 모두 충족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편입생 또한 졸업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졸업유예 신청기간

학기 단위로 최대 2회가 가능하므로 졸업유예 신청의 최대기간은 1년입니다.

졸업유예 신청 시기 및 신청방법

- ① 1회차 신청은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충족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이후 별도 공지한 신청기간 내에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2회차 신청은 졸업유예 최초 학기의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이후 신청기간 내에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득성적 및 학점포기]

실시사유

2017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개편 이전 교과목" 중 수업관리규정 제6조의4에 의한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교과목이 발생하여 수업관리규정 제6조의5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보호조치"로 이를 실시함

신청대상

4학년 1학기(7학기)를 수료한 학생이 아래표의 교과목 중 재수강(아래표의 이수교과목 중 C+ ~ F 성적을 받은 학생)을 희망하는 경우에 취득성적 및 학점 포기 신청 가능합니다. (필히 4학년 1학기(7학기)를 수료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방사선학과, 안경광학전공, 간호학과, 전자공학전공, 자동차공학과 총 5개학과를 제외한 전학과

학과(부)명	취득성적 및 학점 포기 신청 가능 교과목명	
공법행정학과	공중보건행정학 도시행정론 과학기술과 법	토지제도사 정책론
유아교육과	유아발달	실기교육방법론
사회복지학과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언론학과	방송뉴스의 이론과 실제 광고캠페인 방송진행실습 뉴미디어론	스피치커뮤니케이션(2) 방송작가실무 문장연습(2)
글로벌통상경영학과	통상과세무 신용장론 글로벌무역보험 무역전시컨벤션론	외환실무 국제상사중재론 전자무역학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식생활문화 경영통계	마케팅원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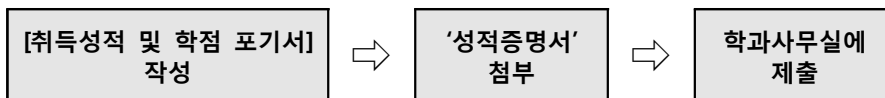
국제어학과	영어강독 한중통번역연습 현대중국어어법	시사중국어 중국어강독
식품조리과학부 식품영양전공	공중보건학 외국음식의 이해 및 실습	기초영양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조리과학부 호텔조리전공	공중보건학 외식창업론	전통한식실습
임상병리학과	의학용어	
치기공학과	치의학용어 임상국부의치기공학 및 실습 임상총의치기공실습	특수의치기공실습 현장임상실습
치위생학과	치과 재료공학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뷰티헬스전공	피부건강학 향 대체요법 뷰티색채 및 코디네이션	모발건강학 공중위생법규 코스메슈티컬
에너지환경공학과	수질공학 및 연습 전기전자공학 전기전자공학실험 작업환경관리학	환경미생물학 실험 상수 및 정수처리공학 물리·화학적 수처리실험
IT융합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윈도우즈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개발방법론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마이닝
섬유소재공학과	섬유염색실험 기능성가공 실험	신소재제조실험
공연예술학과	미디어와인터뷰화법	대중감석과콘텐츠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모션그래픽(1) 모션그래픽(2)	사용자중심디자인 제품디자인스튜디오(2)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패션플랫(도식화의이해) 패션약세사리디자인	이미지메이킹 패션스타일링의 이해
디자인학부 공간디자인전공	전시디자인론	전시디자인스튜디오
총 77개 교과목		

유의사항

- ① 취득성적 및 학점포기를 한 경우 기존 성적증명서에서의 해당 교과목은 삭제되고 총 이수학점에서 차감되며, 이에 따라 총 평점평균 또한 조정됩니다.
※ 졸업학점 이수에 유의
- ② 취득성적 및 학점 포기한 교과목은 다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졸업이수 요건을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취득성적 및 학점을 포기하려는 학생은 7학기 성적 취득일로부터 8학기 개강 전까지 [취득성적 및 학점 포기서]를 작성하고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후에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기취업]

조기취업 자격요건

조기취업의 신청 자격 요건은 마지막 학기(8학기) 등록자로서 반드시 4대보험 가입 직장 취업자에 한하여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국비지원 참가자로 4대 보험 가입 직장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조기취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단순한 국비지원교육에 참가중인 학생은 조기취업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조기취업 신청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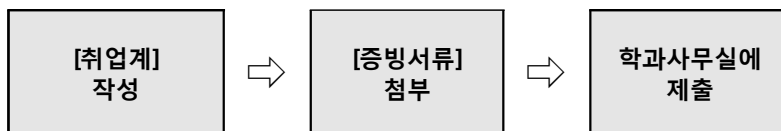
4학년 2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관련 공문을 학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 시기 이후 조기취업 시 동일하게 서식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취업 신청서류

조기취업 신청을 위한 필수서류에는 신청을 원하는 학생이 작성한 취업계 서식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정범위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 직장 취업자	-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국비지원교육 후 취업연계 시)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명서(교육기간 명시) -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조기취업 신청방법



※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명서(교육기간 명시) 등

유의사항

조기취업을 신청하면 학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출석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중간 및 기말 시험에는 응시하여야 합니다.

※ 졸업논문 등에도 필히 응시해야 함.

[조기졸업]

조기졸업대상자 허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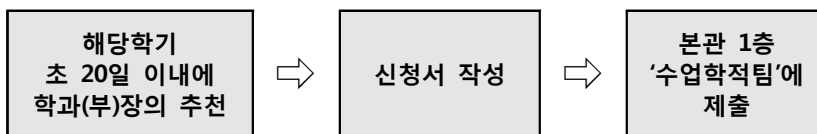
간호학과를 제외하고, 본교에 설치되어있는 전 학과(학부)로 하되 각 학과(학부)별 입학 정원의 3%입니다.

조기졸업대상자 자격

- ①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충족한 학생(130학점) ※ 전공 65학점, 교양 29학점 등 조건에 부합
- ② 외국어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한 학생
- ③ 직전 학기까지의 총 평점평균이 4.30이상인 학생
- ④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
- ⑤ 학사경고 기록이 없는 학생

※ 다만, 재입학 및 편입학 학생은 제외 대상입니다.

조기졸업 신청방법



※ 신청 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이 확정됩니다.

자격상실

- ①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 도중 휴학하는 학생
- ②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 도중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 ③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학기 성적 총 평점이 4.30 미만인 학생
- ④ 본인의 희망에 따라 포기하는 학생

Ⅵ

증명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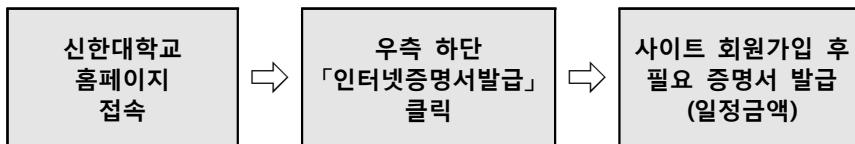
발급신청 가능 증명서

재학증명서	재학생으로서 당해 학기까지의 등록을 마친 자
휴학증명서	휴학생으로서 현재 휴학 증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자
성적증명서	본교에서의 취득학점이 있는 자로서 학업성적의 증명을 요구한 자
졸업증명서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증서를 수여받은 자
졸업예정증명서	졸업학년도 재학생으로서 최종학기 등록을 마친 자
수료증명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
제적증명서	본교에 입학하여 중도 탈락한 자
등록금 납입증명서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자
학적부	본교의 적을 둔 자의 신상에 관한 기록 (외국어 발급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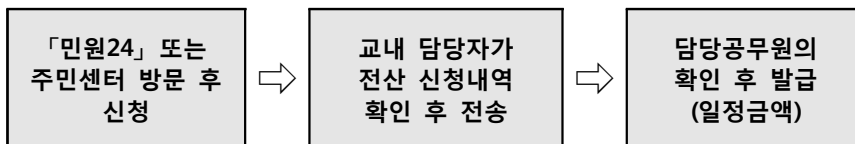
※ 기타 증명서 : 규정에 없는 특별한 증명을 요구하는 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원서 2부를 제출하여 기재사항의 사실 유무를 확인한 후 1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사증명서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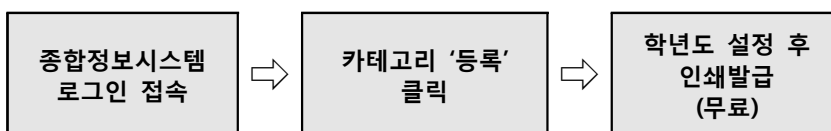
- ① 교내 자동화발급기 : 본관 1층, 호림관 1층에 각각 1대씩 배치(일정금액)
- ② 인터넷



- ③ 공공기관 팩스민원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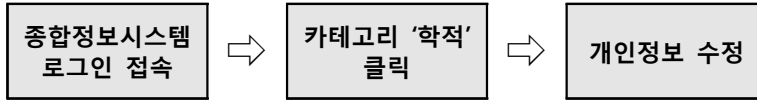


※ 다만, 등록금납입증명서는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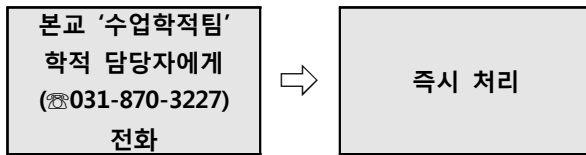


개인정보변경

①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이메일, 보호자 인적사항 등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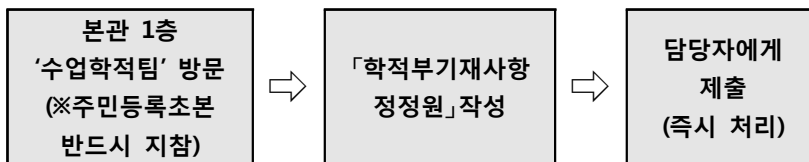


② 영문이름 등록·수정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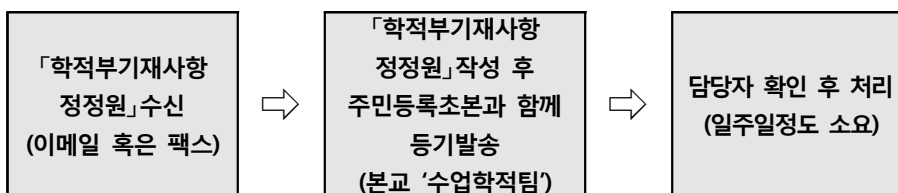


③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수정의 경우

㉠ 본교 '수업학적팀' 방문신청



㉡ 등기신청



VIII

부록

신한대학교 대표 연락처

학교대표번호	031-870-3114
--------	--------------

수업학적팀 담당업무 & 연락처

담당 업무	연락처
교육과정, 학사일정, 실험실습	031-870-3223
수강신청, 시간표, 출·결석, 강의계획서	031-870-3224
시험, 성적평가, 성적, 학점, 졸업학위, 교직자격증	031-870-3225
학적, 휴·복학, 전과, 재입학, 부·복수전공, 트랙 및 전공배정, 현장실습, 증명서	031-870-3226
교직과정, 계절학기, 증명서 발급	031-870-3227
강의평가, 제2캠퍼스 수업·학적 관련	031-870-2916

관련 부서 & 연락처

부서 명(담당 업무)	연락처
학생지원팀(장학금 관련)	031-870-3356
재무회계팀(등록금 관련)	031-870-3386

학과(부) 연락처 및 위치

학과(부)	연락처	위치
공법행정학과	031-870-3460	에벤에셀관 3층 (3140호)
공연예술학과(연기)	031-870-3780	국제관 4층 (4050호)
공연예술학과(K-pop)	031-870-3788	도봉관 지하1층 (B1080호)
글로벌관광경영학과	031-870-3580	에벤에셀관 6층 (6220호)
글로벌통상경영학과	031-870-3540	에벤에셀관 5층 (5250호)
디자인학부	031-870-3650	에벤에셀관 4층 (4100호)
산업디자인전공	031-870-3660	공학관 2층 (2070호)
패션디자인전공	031-870-3677	에벤에셀관 3층 (3190호)
공간디자인전공	031-870-3658	에벤에셀관 4층 (4100호)
방사선학과	031-870-3410	도봉관 5층 (5080호)
뷰티헬스전공	031-870-3440	에벤에셀관 4층 (4290호)
안경광학전공	031-870-3430	도봉관 2층 (2080호)
사회복지학과	031-870-3610	에벤에셀관 4층 (4200호)
식품조리과학부	031-870-3500	호림관 5층 (5120호)
식품영양전공	031-870-3510	호림관 4층 (4010호)
호텔조리전공	031-870-3508	호림관 5층 (5120호)
언론학과	031-870-3760	도봉관 3층 (3121호)
유아교육학과	031-870-3520	도봉관 1층 (1040호)
임상병리학과	031-870-3700	공학관 4층 (4050호)
자동차공학과	031-870-3680	공학관 1층 (1040호)
치기공학과	031-870-3420	공학관 4층 (4120호)
치위생학과	031-870-3450	에벤에셀관 3층 (3300호)
전자공학전공 [2캠]	031-870-1730	본관 2층 (2040호)
컴퓨터공학전공 [2캠]	031-870-1740	본관 2층 (2040호)
간호학과 [2캠]	031-870-1710	베데스다관 2층 (2340호)
국제어학과 [2캠]	031-870-1700	샤론관 2층 (2050호)
섬유소재공학과 [2캠]	031-870-1760	브니엘관 2층 (2120호)
에너지환경공학과 [2캠]	031-870-1720	브니엘관 3층 (3130호)
교양학부	031-870-3770	도서관 1층 (1070호)

캠퍼스별 건물 안내

[1캠퍼스]



①정문 ②지하철입구 ③에벤에셀관 ④벤엘관 ⑤본관 ⑥도봉관 ⑦중앙도서관 ⑧강의동 ⑨호림관 ⑩공학관 ⑪실습관
⑫인수관 ⑬국제관 ⑭산학관 ⑮국제교류원 ⑯베다니집 ⑰의학관 ⑱대운동장 ⑲언약의 교회 ⑳후문 ㉑북문

[2캠퍼스]



①정문 ②본관 ③별관 ④로렘관 ⑤사론관 ⑥브니엘관 ⑦공연장 ⑧베데스다관 ⑨대운동장 ⑩버스승강장 ⑪후문



신한대학교